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7년 11월 30일

○ 상정일자 : 제266회 정례회

2007년 11월 30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
○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를 제33조로,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나. 월정수당 조정

○ 월 1,830,000원에서 월 2,360,000원으로 조정함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

○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